보수규정

제정 1983. 9. 1 규정 제 2호
개정 1985. 2. 5 규정 제 26호
1986. 2. 3 규정 제 41호
1987. 3.10 규정 제 52호
1987. 9. 7 규정 제 58호
1988. 3. 3 규정 제 64호
1989. 6. 1 규정 제 73호
1989.12.26 규정 제 75호
1990. 7.27 규정 제 96호
1990.10.10 규정 제 98호
1991. 3. 7 규정 제102호
1991. 5.31 규정 제106호
1991. 9.12 규정 제114호
1991.12.13 규정 제120호
1992. 8. 4 규정 제127호
1993. 8.17 규정 제138호
1994. 9.27 규정 제171호
1995.12. 5 규정 제191호
1996. 8.13 규정 제208호
1997. 8.25 규정 제243호
1997.11.21 규정 제259호
2000. 4.17 규정 제313호
2001. 7.31 규정 제365호
2001.10.18 규정 제376호
2002. 3.27 규정 제383호
2002.10.19 규정 제410호
2003. 3.10 규정 제426호
2004. 1.31 규정 제462호
2005. 1.26 규정 제491호
2006. 1.09 규정 제519호
2006. 3. 7 규정 제547호
2007. 4.11 규정 제579호
2008. 2.18 규정 제605호
2009. 3. 1 규정 제628호
2010. 6. 1 규정 제656호
2011. 4. 1 규정 제673호
2012. 4.10 규정 제693호
2013. 4. 1 규정 제715호
2014. 4. 1 규정 제734호
2015. 3.31 규정 제767호
2016. 4. 5. 규정 제793호
2017. 3.10 규정 제850호
2017. 4.26 규정 제867호
2018. 4. 3 규정 제925호
2018. 6.21 규정 제935호
2019. 4.19 규정 제961호
2020. 4. 1 규정 제1007호
2021. 4. 1 규정 제1029호
2022. 1. 4 규정 제1056호
2022. 2.24 규정 제1059호
2023. 4.18 규정 제1087호
2023. 6.15 규정 제1093호
2023. 7.31 규정 제1096호
2023.12. 4 규정 제110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4.18.>

1. “본봉” 이라 함은 각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 급여를 말한다.
2. “직무급” 이라 함은 직책 및 직무의 책임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2006.3.7 개정)
3. “호봉급” 이라 함은 근속 및 경력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4. “기본급” 이라 함은 본봉, 직무급 및 호봉급을 합한 급여를 말한다.(2006.3.7 개정)
5. “보수” 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말한다.
6. “제수당” 이라 함은 이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7. “통상임금” 이라 함은 별표 4 통상임금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8. “평가급” 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경영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평가급”지급액을 말한다. <신설 2022.1.4.>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3조(보수의 지급일) ①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급의 30분의 1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기본급의 209분의 1로

한다.(2005.1.26, 2009.3.1)

제5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은 당월에 지급하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익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제6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7.31.>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계산한다.
2. 승진, 승급, 복직, 직위해제, 감봉, 정직, 강등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일할계산한다.(2015.3.31)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를 일할계산한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가.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월 중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다만 징계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계산한다.
   나.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퇴직(그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 경우
4. 공무원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보수는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일·숙직 수당을 지급한다. 단, 통상임금은 공단의 동일직위 평균을 적용한다.

제7조(휴직자의 보수) 휴직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휴직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015.3.31)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1년차에는 최초 휴직발령일 현재 통상임금의 70%를, 2년차에는 최초 휴직발령일 현재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2006.3.7, 2015.3.31)
3.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와 공단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연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04.1.31 개정)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5. 병역법에 의한 징집 및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휴직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5, 2008.2.18, 2009.3.1, 2011.4.1, 2013.4.1, 2015.3.31)
7.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호신설 '07.4.11)
8. 개인적 필요에 의한 해외유학 또는 배우자의 해외근무·유학·연수 동반을 사유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본호신설 '09.3.1)<개정 2019.4.19.>
9. 인사규정 제33조 11호에 의한 휴직시에는 그 기간중 휴직 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호신설 2015.3.31)

제8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급의 일부를 지급한다.(2006.3.7. 개정) <개정 2023.12.4.>

1.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 기본급의 80퍼센트
2.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 기본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삭제 <2023.6.15.>

제8조의2(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등의 취소 시 보수)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는 경우(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포함)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기간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6.15.]

제9조(결근자의 보수) ①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06.1.9)

②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상시의 지급) ①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보수의 지급일 전이라도 월 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왕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본급

제11조(기본급) ①직원의 기본급은 별지의 별표 2와 같다.(개정 '06.3.7, '07.4.11, '09.3.1, 2011.4.1, 2012.4.10, 2013.4.1, 2015.3.31)

②수습기간중의 직원의 기본급은 본봉 및 직무급과 초임 호봉급을 지급하며 제수당은 근무조건이 유사한 당해 직급의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2006.3.7 개정)

③직무대행 발령시의 기본급은 그중 상위직의 직무급을 지급하되, 1개월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2006.3.7 개정)

④2급이하 직원이 처장 상당 직위보직시 1급의 직무급 및 직책급수행비와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한다. 단, 4급 직원이 팀장 상당 직위보직시 3급의 직무급 및 직책급수행비를 지급한다.(2006.3.7 신설)

제12조(호봉승급기간 및 가호봉 제한) ①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직원의 정기 호봉승급시기는 매월 1일로 한다.(2015.3.31)

③직원이 호봉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제수당

제13조(수당의 종류) ①공단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수당	2. 시간외근무수당	3. 휴일근무수당
4. 야간근무수당	5. 연차수당('05.1.26)	6. 상여수당
7. 위험수당	8. 가족수당	9. 일.숙직수당
10. 삭제('91.3.7)	11. 삭제('95.12. 5)	12. 삭제('95.12. 5)

13. 특수직수당 14. 삭제('95.12. 5) 15. 장기근속수당
16. 삭제('95.12. 5) 17. 삭제(2000.4.17) 18. 삭제(2011.4.1)
19. 삭제('09.3.1) 20. 삭제('05.1.26) 21. 삭제<2018.4.3.>
22. 대우수당 (신설 2013.4.1)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지의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06.3.7, '07.4.11, '10.6.1, 2011.4.1, 2013.4.1, 2015.3.31)

제5장 평가급 <신설 2022.1.4.> [종전 제5장은 제6장으로 이동 <2022.1.4.>]

제14조(평가급) 평가급은 개인별 보수(연봉)월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보수규정시행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4.]

제6장 퇴직금 [제5장에서 이동, 종전 제6장은 제7장으로 이동 <2022.1.4.>]

제15조(퇴직금)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퇴직급여규정에 의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4.>]

제16조(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평균임금의 범위는 별표 4 평균임금란에 따른다. <개정 2023.4.18.>

1. 삭제 <2023.4.18.> 2. 삭제 <2023.4.18.> 3. 삭제 <2023.4.18.>
4. 삭제 <2023.4.18.> 5. 삭제 <2023.4.18.> 6. 삭제 <2023.4.18.>
7. 삭제 <2023.4.18.> 8. 삭제 <2023.4.18.> 9. 삭제 <2023.4.18.>
10. 삭제(2011.4.1) 11. 삭제(2009.3.1) 12. 삭제(2005.1.26)
13. 삭제 <2023.4.18.> 14. 삭제 <2023.4.18.> 15. 삭제 <2023.4.18.>
16. 삭제 <2023.4.18.> 17. 삭제<2019.4.19.> 18. 삭제 <2023.4.18.>
19. 삭제 <2023.4.18.> 20. 삭제 <2023.4.18.> 21. 삭제(2010.6.1)
22. 삭제(2010.6.1) 23. 삭제 <2023.4.18.> 24. 삭제 <2023.4.18.>
25. 삭제<2018.6.21.> 26. 삭제 <2023.4.18.> 27. 삭제 <2023.4.18.>
28. 삭제 <2023.4.1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4.>]

제7장 보칙 [제6장에서 이동 <2022.1.4.>]

제17조(전문위원 등의 보수) 전문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의 보수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4.>]

제18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개월 범위내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동일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4.>]

제19조(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4.>]

제20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1.4.>]

제21조(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1.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파견근무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소급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본급과 이에 영향을 받는 수당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직원의 호봉재산정) 삭제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본급과 이에 영향을 받는 수당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2.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8.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본급과 이에 영향을 받는 수당은 1992. 1. 1부터 시행하고, 임원의 기본급은 199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8.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기본급과 이에 영향을 받는 정율급 수당은 1993. 1. 1부터 소급 적용하되 3급이상 임·직원은 1994.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강관리비 미지급으로 인한 보전조치) 노사임금협약서('94.5.20)의2의 나중 "건강관리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급여가 감소된 경우 감소액을 보전지급한다."에 의거 감소액을 지급하되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따른 보완조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상위하는 1종만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단, 보수규정 제2조의 통상임금의 범위중 급식보조비는 월 30,000원을 통상임금으로 별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당통합에 따른 보전조치) 노사임금협약서('95.9.5)의 제3항중 "수당통합으로 급여가 감소될 경우 감소액을 보전한다."에 의거 감소액을 지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통상임금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보완조치) 보수규정 제2조제7호의 통상임금 적용수당은 전액 통상임금화 한다.

④(경과조치)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중 3년이내 군복무기간 합산은 1996년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⑤(부칙삭제) 1990년 10월 1일 시행된 부칙중 제2항(재직중인 직원의 호봉재산정)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 및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본급은 1997년 6월 30일까지는 기본급표에서 30,000원이 공제된 금액으로 한다. 또한,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기술수당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4.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7.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제5호 연월차수당, 제19호 생활안정수당, 제20호 건강관리수당에 관한 규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은 2003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1.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신규사업개발단 근무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23호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산입 적용함에 있어, 신규사업개발단 근무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토록 한다.

부 칙(2006.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8조, 제11조(별표 1은 제외), 제15조 및

별표3의 제18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별표 2>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별표 2>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3.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1조<별표 2>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6.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4.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3.4.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3조 22호, 제15조 26호, 제11조 <별표 2> 직원 기본급표(2012.1.1부 적용), 제13조 <별표 3> 22호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호봉재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현재 기존 호봉이 5호봉에 미달하는 경우 5호봉에 도달할 때까지 다음의 호봉을 적용한다. (개정 2014.4.1)

<2013.1.1일부 적용>

(단위 : 원)

기존 호봉	1	2	3	4
금액	218,400	252,900	287,200	324,400

<2014.1.1일부 적용>

(단위 : 원)

기존호봉	1	2	3	4
금액	238,700	276,400	313,900	354,600

부 칙(2014.4.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1조 <별표 2> 직원 기본급표(2013.1.1부 적용), 부칙(2013.4.1) 2항의 <2013.1.1일부 적용> 및 <별표 3>제수당 지급기준표의 기술수당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4.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3.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4.3.)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2.직원기본급표(2017.1.1.부 적용)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21)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19)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2” 기본급표(2018.1.1.부 적용)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4.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임원및직원퇴직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수규정 제14조”를 “보수규정 제15조”로 한다.

부 칙(2022.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4.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2” 기본급표(2022.1.1.부 적용)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6.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7.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11조 관련)('03.3.10, '04.1.31, '05.1.26)(2006.3.7 개정)(삭제 2009.3.1)

<별표 2>(제11조 관련) <개정 2023.4.18.>

직원 기본급표(2021.1.1부 적용)

(단위 : 원)

직급	본봉	직무급	계	호봉급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급	2,097,600	1,716,600	3,814,200	1	543,900	21	1,647,600
2급	2,012,200	1,363,400	3,375,600	2	601,100	22	1,702,800
3급	1,940,200	1,154,900	3,095,100	3	656,500	23	1,755,500
4급	1,875,700	922,900	2,798,600	4	713,700	24	1,812,700
5급	1,806,000	676,200	2,482,200	5	773,000	25	1,867,700
6급	1,704,500	412,600	2,117,100	6	830,300	26	1,920,900
7급	1,596,700	383,600	1,980,300	7	890,100	27	1,968,800
7급(보)	1,386,100	368,100	1,754,200	8	944,800	28	2,012,200
8급	1,175,300	352,300	1,527,600	9	1,002,400	29	2,055,600
				10	1,057,300	30	2,099,000
				11	1,115,900	31	2,142,400
				12	1,169,400	32	2,185,800
				13	1,224,800	33	2,229,200
				14	1,279,700	34	2,272,500
				15	1,334,800	35	2,315,900
				16	1,389,900	36	2,359,300
				17	1,440,600	37	2,402,700
				18	1,491,200	38	2,446,100
				19	1,544,200	39	2,489,500
				20	1,594,900	40	2,532,900

직원 기본급표(2022.1.1부 적용)

(단위 : 원)

직급	본봉	직무급	계	호봉급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급	2,145,200	1,762,500	3,907,700	1	543,900	21	1,647,600
2급	2,057,600	1,405,900	3,463,500	2	601,100	22	1,702,800
3급	1,983,200	1,194,500	3,177,700	3	656,500	23	1,755,500
4급	1,916,100	959,100	2,875,200	4	713,700	24	1,812,700
5급	1,843,600	709,000	2,552,600	5	773,000	25	1,867,700
6급	1,738,000	440,400	2,178,400	6	830,300	26	1,920,900
7급	1,629,000	410,600	2,039,600	7	890,100	27	1,968,800
7급(보)	1,415,800	393,400	1,809,200	8	944,800	28	2,012,200
8급	1,202,400	375,900	1,578,300	9	1,002,400	29	2,055,600
				10	1,057,300	30	2,099,000
				11	1,115,900	31	2,142,400
				12	1,169,400	32	2,185,800
				13	1,224,800	33	2,229,200
				14	1,279,700	34	2,272,500
				15	1,334,800	35	2,315,900
				16	1,389,900	36	2,359,300
				17	1,440,600	37	2,402,700
				18	1,491,200	38	2,446,100
				19	1,544,200	39	2,489,500
				20	1,594,900	40	2,532,900

<별표 3>(제13조 관련)(개정 '03.3.10, '05.1.26, '06.3.7, '07.4.11, '08.2.18, '09.3.1, '10.6.1, '11.4.1, '13.4.1, 2014.4.1, 2015.3.31., 2016.4.5, 2018.4.3, 2019.4.19., 2022.1.4.)

제수당 지급기준표

수당별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 기술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 X $\frac{1.5}{209}$ X 시간	· 예산범위안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단,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적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 등을 따른다.
3. 휴일 근무수당	통상임금 X $\frac{1.5}{209}$ X 시간	
4. 야간 근무수당	통상임금 X $\frac{0.5}{209}$ X 시간	
5. 연차 근무수당	통상임금 X $\frac{1}{209}$ X 8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다.
6. 상여수당	< 삭 제 >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7. 위험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8. 일·숙직 수당		·일·숙직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9.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0 ~ 12.삭 제		
13. 특수직 수 당	·장례기사 : 내규에 의함 ·법정관리자 : 내규에 의함 · < 삭 제 > ·종합시설관리사 : 월 50,000원이내	·화장업무를 수행하는 장례기사에게 지급하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법정관리자로 선임된 자중 위험수당 미수혜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삭 제 > ·종합시설관리사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4. 삭 제		
15. 장 기 근속수당	·20년 이상 근속자 : 월 80,000원 ·15년 이상 근속자 : 월 60,000원 ·10년 이상 근속자 : 월 50,000원 · 5년 이상 근속자 : 월 40,000원	※ 장기근속수당 지급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3년 이내의 군복무기간을 포함한다.
16 ~ 20.삭 제		
< 21.삭 제 >		
22.대우수당	·4급(부장대우) : 월 70,000원 ·5급(과장대우) : 월 60,000원 ·6급(대리대우) : 월 50,000원	·인사규정 제26조의4에 의해 직급대우로 임용된 자에게 지급한다.

<별표 4>(제2조 제7호 및 제16조 관련) <신설 2023.4.18.>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구 분	포함범위
통상임금	기본급, 기술수당, 위험수당, 특수직수당,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단체보험료, 직책급수행비, 직책급수행보조비, 특수직장려금, 출퇴근보조비, 공사감독활동비, 안전점검활동비, 체납징수지원비, 통신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단체보험료는 보수규정시행내규로 정한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통상임금 항목 및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반장수당, 상여금, 행사보조비, 효도휴가비, 성과장려금 및 평가급으로 한다.